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박한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보호·장려를 위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안 제8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경우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적정하고 공무원의 연구의욕 장려에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